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 고 인 정0성 (7*****-*****), **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김해시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여, **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18. 13:28경 부산 **** * ** , *****(***)에서 친구들과 탁

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1998. 3. 9.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16. 4. 18.경부터 2025. 2. 25.경까지 00000의료원, 0000000병원, 000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 7.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2023. 1. 3.부터 같은 달 25.까지, 2024. 6. 14.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00000의료원에서, 이 사건 발생 후인 2024. 8.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2024. 9. 5.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0000000병원에서 각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성폭력 사건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66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적응 수준은 만 7세 10개월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심리평가를 담당할 임상심리전문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며 먼저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고, (...) 자신의 언행에 대한 타인 반응의 결과를 예상하기 등은 어려우며, 상당히 미성숙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듯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전에 교회에서 몇 차례 본 적 있는 피해자를 ***에서 보게 되었고, ***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잘 지내나?”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잠깐 순간적으로 손을 올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반가움과 편면적인 친밀감에서 취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미성숙한 사회적응능력 등 지적장애로 인한 이상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4) 사건 당시 *** CCTV 영상에 따르면,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 내부 테이블에서 컵라면 등을 먹기 위하여 앉아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약 3~4분 정도 앉아 있는 장면, 피해자 일행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가 바로 떴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목격자가 다수 있는 공개된 ***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흔한 일이 아닌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불 여지가 크고, 오로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추행의 고의를 선불리 추단할 것은 아니다.

5) 결국,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추행의 고의 없이 친근감과 반가움의 양상으로 별다른 의미 없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순간적으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해자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
	판사	_____
	판사	_____